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2
----------	--------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개입-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6. 4. ~ 6. 24.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5)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8.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적용범위),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

나. 수입발생 요인 :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0. 11. ~ 2024. 12.(5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홍보비	700	1,000	1,000	1,000	1,000	4,700
	검사비	16,000	98,000	98,000	98,000	98,000	408,000
	활동비	300	1,000	1,000	1,000	1,000	4,300
	소계(b)	17,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17,000
□ 총비용(a-b)		17,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17,000

4.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 보조금 지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등 다각적 노력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오상철
연락처	02-3153-8961